

## 협회 업무활동

### ▣ 공정거래 교육

#### ▶ 롯데그룹 전 계열사 공정거래교육 실시

- 교육일자 : 8월 26일(화)~27일(수) 1박2일
- 교육장소 : 롯데오산연수원
- 참 석 자 : 롯데그룹 전 계열사 공정거래담당 실무책임자 63명
- 교육내용 : 대규모내부거래공시제도/기업결합/경품류 제공행위 유형 및 기준/표시 광고 등

#### ▶ 사업자단체 임원 공정거래세미나 실시

- 세미나일시 : 9월 2일(화) 14:00~16:40
- 세미나장소 : 연세빌딩 24층 국제회의실
- 참 석 자 : 주요 사업자단체 임원 76명
- 세미나내용 : ·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과 향후 운영방향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경쟁국장)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김태형 단체과장)

#### ▶ 하도급관련 특별교육 실시

- 교육개요 :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의를 제고하고 법위반 행위의 사전예방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도모
- 교육일시 : 9월 18일(목) 14:00~17:30
- 교육장소 :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제조 및 건설업체 하도급관련업무 임원 156명
-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김태구 과장
- 교육특징 : 하도급관련 특별교육 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별점감점) 부여

#### ▶ 제5기 공정거래전문연수과정 실시

- 연수일자 : 9월 24일(수)~26일(금) 3일간
- 연수장소 : 연세빌딩 24층 국제회의실
- 연수대상 :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업무 실무책임자 등 총 60명

- 연수과정 구성 : 공정거래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사례중심의 토의과정, 관련법 체계 및 주요내용과 심결사례 해설 등으로 구성  
(총 11주제, 강사: 공정거래위원회 각 과장)
- 향후 발전방향 : 공정거래지도사(가칭) 자격증 대비 연수과정으로 발전시킬 예정

▶ 제6기 공정거래전문연수과정 실시계획

- 연수일자 : 11월 12(수)~13(목) 1박2일
- 연수장소 : 용인 한화리조트
- 연수대상 : 금융기관 및 관련단체 공정거래업무 임직원 60명 내외  
※ 추후 교육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공정거래 해외연수 예정

- ▶ 연수목적 :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선진 경쟁당국의 경쟁법 적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 제고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실시
- ▶ 연수국가 : 호주, 뉴질랜드
- ▶ 방문예정기관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호주 재무부, CP전문가협회 등
- ▶ 연수기간 : 2003. 10. 23(목)~31(금) 8박9일
- ▶ 참가대상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 임직원 25명
- ▶ 참가비 : 300만원(1인 경비기준, 여권발급비 별도)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22차 조정회의 개최

▶ 사건처리현황(2003. 1. 1~8. 31)

구분	계	조정불성립	신고취하	불개시
제조	32	5	24	3
건설	40	8	28	4
계	72	13	52	7

## 롯데그룹 전 계열사 『공정거래 위탁교육』 실시

한국공정거래협회(회장 김 용)는 롯데그룹과 공정거래 위탁교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전 계열사의 공정거래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및 제도의 이해와 담당업무 수행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8월 26(화)부터 27일(수) 1박2일간 롯데오산연수원에서 『공정거래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롯데그룹 공정거래담당 실무책임자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교육에서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제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관련 제고시 및 지침 ▲경품류 제공행위 유형 및 기준과 대규모소매점고시의 주요내용 ▲CP운영사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표시광고의 공정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금지제도 등을 중심으로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면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강의와 실무사례 해설, 질의 및 응답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 윤주선 사무관은 계열회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는 우량기업의 핵심역량의 약화,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 초래 등 국민경제적 피해가 크며, 사후적인 조사·시정과 함께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관련 제고시 및 지침」에 관한 발표에서 기업결합과 전성복 사무관은 기업결합은 기업의 지배·경영의 주체를 혁신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독과점 형성이라는 역기능도 발생한다며 각국에서는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의 발생은 억제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규모소매점업고시」와 「경품고시」 조문내용을 위주로 해설하면서 현장실무사례를 함께 강의한 유통거래과 서남교 사무관은 품질경쟁보다 고가의 경품제공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부당경쟁을 방지하여 품질이 우수한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품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날 공정거래 교육에서 하도급기획과 구상모 사무관은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하도

급대금, 사건처리절차 등의 설명과 함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라고 밝혔다.

표시광고과 박주영 사무관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소비자가 믿을 가능성이 있는 광고상 주장에 대하여 당해 광고주에게 그 실증을 요구함으로써 광고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고실증제도가 도입되었다며 2002년말까지 공정위가 기업에게 광고실증자료를 요청한 건수는 26건이고, 그 중 4건에 대해 실증자료가 공개되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금지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경쟁촉진과 송정원 사무관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에 속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비경쟁적인 유통구조하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 본 협회에서는 향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원사와 협회간의 용역계약에 의한 「공정거래 위탁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 『사업자단체 공정거래세미나』 실시

「표준약관 심사제청권」을 소비자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추진



한국공정거래협회(회장 김 용)는 사업자단체 임원급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자단체 임원 공정거래세미나』를 지난 9월 2일(화)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한국공정거래협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 공정위 정재찬 경쟁국장은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과 향후 운영방향」 주제발표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정책 운영방향으로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 ▲선진화된 경영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지배시스템을 개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기반 위에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소비자가 기업간 경쟁을 유도하고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사업자(단체)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표준약관 심사제청권”을 소비자단체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주제발표에서 공정위 김태형 단체과장은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98년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업자단체 수는 6천 310개에 달하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건수는 1천 건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업자단체 유의사항으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구속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가 타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와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 『하도급관련 특별교육』 실시

- 교육이수업체에게는 벌점 1점 감점혜택의 인센티브 부여
- 임직원 150여명 신청으로 조기마감되어

한국공정거래협회(회장 김 용)는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의를 제고하고 법위반 행위의 사전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지난 9월 18일(목) 하도급 관련업체 임원 1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에서 『하도급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하도급법 개관 및 적용범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신고사건처리사례 등을 중심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김태구 과장은 하도급법의 목적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

회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벌점감점, 과징금 감면, 현장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시행중에 있고 금년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 수단의 사용을 적극 유도하여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 특별교육은 신청기업이 많아 조기에 마감되었으며, 교육이수 기업의 임원에 게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범위반 점수누계에서 1점의 감점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한국공정거래협회는 9월 24일~26일(3일간)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업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제5기 공정거래전문연수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 ▣ 질의/응답

- ▶ **질의** ● 물가상승률과 관련하여 당사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물가상승률이 5% 이내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발주자로부터 5% 이내의 물가상승률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적용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 ▶ **답변** ● 하도급법은 민사특별법이고,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사항이 하도급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5% 이내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물가상승률을 적용받았다면 그 비율과 내용에 따라 적용해 주어야 한다.
- ▶ **질의** ●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의 우월적지위에 따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나, IMF이후 수급사업자의 지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생각되는데 하도급법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는지 여부
- ▶ **답변** ● 하도급법이 운영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대기업들조차도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하도급법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 ▶ **질의**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대금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여도 좋다는 것을 약정한 후 어음을 발행한 후 추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한 경우에 당사자 약정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 **답변** ● 하도급법은 민사특별법이고 강행규정으로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하도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민사상 소송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22차 조정회의 개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협회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김 용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8월 29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사안과 그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 ▣ 조정종료(취하)

#### ▶ (주)우광케미칼 등 13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재 및 양당사자간 합의로 신고인들이 신고취하서를 제출, 조정절차를 종료함.

### ▣ 조정불성립

#### ▶ 아남종합건설(주) 등 4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

- 양당사자의 의견이 상이하고, 피신고인이 이면합의사항을 주장하며, 대금지급여력부족을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 되었음..

### ▣ 사건처리현황

▶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처리한 사건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조정불성립	신고취하	불개시	계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요청	제조	1	9	-	10
	건설	8	22	2	32
	계	9	31	2	42
분쟁당사자 조정요청	제조	4	15	3	22
	건설	-	6	2	8
	계	4	21	5	30

※ 불개시는 하도급거래 및 당사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가 반려된 것임.

---

## 신규회원사 소식

---

신규회원이입을 축하드립니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이재웅

서비스도매, 프로그램개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6-1 데이콤빌딩 12층

###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

본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75-8870~2 FAX (02)775-8873